#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75

발의연월일: 2023. 7. 4.

발 의 자:김용민·김정호·이동주

임오경 · 서동용 · 최혜영

강민정 · 김남국 · 최강욱

윤준병 • 황운하 • 조오섭

이수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등의 책무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있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는 지원과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이에 국가 등의 책무에 재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속한 구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재난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호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피해를 체계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연대하거나 전 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추모사업의 추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
	리 보호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하고, 재난의 발생 원인
	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재난으
	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
	<u> 여야 한다.</u>
<u>③</u>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u>&lt;신 설&gt;</u>	제5조의2(재난피해를 입은 사람
	의 권리)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구호와 관련된 정
	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
	가 있으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피해를 체계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연대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추모사업의 추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